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중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51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진중오 · 유용원 · 권영진
박정훈 · 이만희 · 이종배
김용태 · 김승수 · 고동진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제작·촬영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이 국가 이미지와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우수한 영상콘텐츠의 촬영지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영화, 드라마 촬영 유치를 위한 제작 단계에서의 일시적 지원 외에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관광산업의 개발과정에서 관광객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 지역상생 방안의 마련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3 신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13을 제48조의14로 하고, 제48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3(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반의 관광산업 및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영화, 방송영상물 등 문화콘텐츠(「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관광자원화 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이하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문화콘텐츠 관련 관광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콘텐츠연계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의 개발·홍보, 문화콘텐츠 관련 관광자원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

이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관광수익의 지역 환원 및 지역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절차, 지원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8조의13(문화콘텐츠연계 관광</u> <u>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문화</u> <u>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반의</u> <u>관광산업 및 지역의 관광진흥</u> <u>을 위하여 영화, 방송영상물 등</u> <u>문화콘텐츠(「문화산업진흥 기</u> <u>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u> <u>화콘텐츠를 말한다. 이하 같다)</u> <u>의 제작·촬영지 및 관련 시설</u> <u>등을 관광자원화 하고, 이를 활</u> <u>용한 관광산업(이하 “문화콘텐</u> <u>츠연계 관광산업”이라 한다)을</u> <u>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u> <u>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u> <u>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활성화</u> <u>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u> <u>을 받아 문화콘텐츠 관련 관광</u> <u>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u> <u>활용·관리가 필요한 지역을</u> <u>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으로</u> <u>지정하고, 문화콘텐츠연계 관광</u> <u>상품 및 프로그램의 개발·홍</u>

<u>제48조의13</u>(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생략)	<u>보, 문화콘텐츠 관련 관광자원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이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관광수익의 지역 환원 및 지역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④ 제2항에 따른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절차, 지원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48조의14</u>(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현행 제48조의13과 같음)
---	--